

「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(도동지구) 조성사업」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230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5. 10.

제 출 자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3대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「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(도동지구) 조성사업」은 국·시비 재배정 사업으로서, 달성군 소유의 부지를 활용하여 대구시 소유의 건축물을 조성함에 따라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추진경과

- 가. 2016. 3. : 낙동가람 기본계획 수립(市)
- 나. 2017. 2. : 업무이관 및 실행계획 송부(市→달성군)
- 다. 2017. 6. : 도동지구 사업추진계획 수립
- 라. 2018. 2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
- 마. 2019. 12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
- 바. 2021. 4. : 총사업비 협의 완료(문체부, 기재부)
- 사. 2021. 6. : 공사 착공
- 아. 2023. 6. : 준공 예정

○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(도동지구) 조성사업
- 나. 위치 :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55번지 외 4필지
- 다. 사업기간 : 2017년 ~ 2023년
- 라. 사업비 : 7,024백만원(국비 4,916백만원, 시비 2,108백만원)
- 마. 사업규모
 - 대지규모 : 24,216m²
 - 건축규모 : 525.51m², 지상1층, 10개동(전통목구조)
- 바. 소유 및 시설운영 : 대구시(운영권에 대한 협의 추진 중)

○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 부지에 영구시설물(건축물) 축조 허용 요청
- 나. 허용방법 :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이관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동의
- 다. 요청기관 : 대구광역시

3. 기대효과

- 국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관광사업인 3대문화권 문화·생태 관광 기반 조성사업으로 낙동강 수변역사자원 가치 재발견을 통해 달성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및 수변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,
-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도동서원의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의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을 통해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

4. 참고사항

-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 업무이관 공문
- 관계법령
- 위치도 및 배치도

참고 1

업무이관 및 실행계획 송부

2017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/ 2017.3.19 - 25



대 구 광 역 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조성사업」 업무이관 등 실행계획 송부

1. 3대문화권 문화·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「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조성사업」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실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귀 기관(부서)에 송부하오니 관련기관(부서)에서는 불임 업무분장 등을 참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○ 업무분장 내역(불임 계획서 참고)

가. 시 관광과 : 예산관리 및 중앙부처 협의 등 사업총괄

나. 건설본부 : 회원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, 인허가 및 공사시행 등

다. 달성군 : 도동지구 부지매입 등 사업시행 전반, 회원·도동지구 관리운영

라. 시 공원녹지과 : 회원지구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협의 등 협조

2. 특히 달성군에서는 도동지구 부지매입, 공사시행 등 관련절차 이행에 차질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서 1부. 끝.

대 구 광 역 시 장



수신자 공원녹지과장,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장(건축과장), 달성군수(관광과장)

주무관 김중현 관광개발팀장 김진돈 관광과장 전결 2017. 2. 6. 박동신

협조자

시행 관광과-1242 (2017. 2. 6.) 접수 관광과-1636 (2017. 2. 7.)

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, (동인동1가, 대구광역시청) / <http://www.daegu.go.kr>

전화번호 053-803-3893 팩스번호 053-803-3819 / beatles1234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대구시에 궁금할 때! 국번없이 120

참고 2

관계법령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 재산에 건물, 도랑·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~ 10. 생략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“공용재산”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“공공용재산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참고 3

위치도

위 치

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55번지 일원



배 치 도

